

2015년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사항 설명회

주요 내용

- ▣ 가격안정화장치 개선방안 1
-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 도입방안 10
- ▣ 과다호가부담금 징수기준 완화 18

※ 동 제도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재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처 : KRX 파생상품제도부 이메일(d.rules@krx.co.kr)
 - 가격제한폭 개선 : 051-662-2792~2799
 - 장중 위탁증거금제도 도입 : 051-662-2805, 2795

2015. 3

한 국 거 래 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I. 가격안정화장치 개선방안

I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안)

1 개요

- (적용대상 : 주식관련 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스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식옵션,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 협의대량거래의 일중가격제한범위*도 경쟁거래의 일중 가격제한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 * 협의대량거래 신청 시 가격범위(직전체결가±a)와는 다른 개념으로, 당일 중 협의대량거래 신청 가능한 최대가격범위를 의미
 - ** 예) 협의대량거래의 직전체결가격이 상한가인 경우,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는 최대 상한가까지 밖에 설정할 수 없으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는 경우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도 확대
 - “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은 예외로 현행과 동일한 비율 유지 (가격제한폭 고정)
- (단계별 적용비율) 상품별 가격제한폭을 3단계로 구분·확대

상품		현행	개선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 상품	코스피200선물	±10%	±8%	±15%	±20%
	코스피200옵션**	±15%			
	스타지수선물	±10%			
	섹터지수선물	±10%			
	변동성지수선물	±30%			
주식 상품	주식선물	±15%	±10%	±20%	±30%
	주식옵션**	±18%			

* 해당비율을 곱하여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현행 산출방법으로 호가가격단위 조정

** 옵션(코스피200옵션, 주식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전일종가 뿐만 아니라 변동성 변화도 고려하여 제한폭 설정(상한가 방향 +50%, 하한가 방향 -50%)

2 가격제한폭 확대요건

① **(기준종목 가격급변)**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할 경우,

○ 그 시점으로부터 5분** 이상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스프레드의 제약가격은 제외(개별 선물종목 체결가격만 고려)

** 5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중단, 필요적중단으로 재개시에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거래를 재개

(예)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확대

▶ **(기준종목)** 상품별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 해당종목이 당일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인 경우 전일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은 종목

* 전일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은 거래량 비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상품)** 선물 기준종목이 “확대요건”에 도달할 경우, 관련 선물종목(기타월물 등) 및 옵션종목의 가격제한폭 동시 확대

- 변동성지수선물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을 기준으로 판단

상품군	기준상품	동시확대상품
코스피200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
스타지수상품	스타지수선물	-
섹터지수상품	섹터지수선물	-
개별주식상품	개별주식선물	주식옵션

* 상품군은 시행세칙 별표19의 증거금 산출을 위해 구분한 상품군과는 상이

▶ **(방향별 적용)** 상품 특성에 맞춰 **상승방향**(상한가)과 **하락방향**(하한가)을 구분하여 가격제한폭 확대

- 기준종목 선물가격 상승(하락)으로 “확대요건” 도달시,
 - 1)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외] : 기타월물 모두 상승방향(하락방향)
 - 2) 콜옵션 : 상승방향(하락방향)
 - 3) 풋옵션 : 하락방향(상승방향)
 - 4) 변동성지수선물 : 양방향

▶ **(적용시간)** 09:05~15:05(가격제한폭 확대시점 기준, 판단시각 기준 9시~15시)

-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 : 09:05~거래시간 종료 시까지

▶ **(조치사항)** “확대요건” 충족 시 별도의 단일가거래시간 부여 없이 가격제한폭 확대

② **(주식CB 발동)** 주식시장에서 CB 발동 시 발동을 야기한 지수수준을 초과하는 비율*로 대상상품 가격제한폭 확대

* 해당 값이 복수일 경우는 절대값이 작은 값 적용

(예1) 지수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
(지수 : -17% → 파생 가격제한폭 : -20%)

(예2) 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9%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15%**로 확대
(지수 : -9% → 15 vs 20 → 파생 가격제한폭 : -15%)

- ▶ **(대상상품 및 방향)** 코스피200선물(스타지수선물)의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
- ▶ **(판단시간)** 주식시장 CB발동시간과 동일(9시1분~14시20분)
- ▶ **(조치사항)** 대상상품 20분간 거래중단하고, 가격제한폭 확대 후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재개
 - 다만 가격제한폭이 당해수준으로 이미 확대되어 있는 경우는 가격제한폭 확대 없이 20분간 거래중단 및 10분 단일가거래로 재개

(예) 선물가격제한폭이 이미 $\pm 15\%$ 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8% 하락하여 CB가 발동되는 경우,
 ⇒ 선물가격제한폭은 그대로 유지

- ③ **(동시발생)** 기준종목 가격급변 및 주식CB발동이 동시발생할 경우, 주식CB 발생요건에 따른 가격제한폭 적용
 -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 도달 후 “5분경과 이전에” 주식CB 발동시, 단일가거래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II

기타 관련제도 반영사항

1 가격제한폭 확대시 호가의 처리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해제 등)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하고,
 - 해당시점으로부터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등 가격미지정호가의 접수도 거부

- (시장가호가 재의제)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 추가적인 호가 접수

*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필요

(예1) 매수지정가호가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 원래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일중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 확대 시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 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 후 호가를 접수

(예2) 직전체결가격이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어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조건부지정가호가) 기접수된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 시간에만 시장가로 전환되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영향 없음

- (최유리지정가호가)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에 체결 또는 특정 가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영향 없음
- (FOK, IOC 등 조건이 부여된 호가) 기접수된 당해호가들은 모두 체결 또는 취소되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영향 없음
- (호가의 정정)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경우 최유리지정가 또는 시장가로의 호가정정이 불가

《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호가의 정정 방법 》

구분	정정유형		일반상황	확대상황
동일 종류 호가간 정정	지정가	→ 지정가	가격변경시 허용	좌동
	조건부지정가	→ 조건부지정가	가격변경시 허용	좌동
	최유리지정가	→ 최유리지정가	가격변경시 허용	불허
	시장가	→ 시장가	불허	불허
다른 종류 호가간 정정	지정가	→ 조건부	허용	좌동
	지정가	→ 최유리지정가	가격변경시 허용	불허
	지정가	→ 시장가	허용	불허
	조건부지정가	→ 지정가	허용	좌동
	조건부지정가	→ 최유리, 시장가	허용	불허
	최유리지정가	→ 지정가	가격변경시 허용	좌동
	최유리지정가	→ 조건부	허용	좌동
	최유리지정가	→ 시장가	허용	불허
	시장가	→ 지정가, 조건부	허용	좌동
시장가	→ 최유리지정가	허용	불허	
호가의 조건 부여 유형	지정가	→ 지정가(조건 有)	가격변경시 허용	좌동
	지정가	→ 최유리지정가(조건 有)	가격변경시 허용	불허
	최유리지정가	→ 최유리지정가(조건 有)	가격변경시 허용	불허
	지정가, 조건부, 최유리	→ 시장가(조건 有)	허용	불허
	시장가, 조건부	→ 지정가(조건 有)	허용	좌동
	시장가, 조건부	→ 최유리지정가(조건 有)	허용	불허
	최유리지정가	→ 지정가(조건 有)	가격변경시 허용	좌동

2 정보제공 관련사항

- (거래소 → 회원) 거래소는 회원에게 매거래일 장종료 후 3단계 가격제한폭 정보를 포함한 종목정보를 제공하고,
 - 장중 가격제한폭 요건 도달 시 가격제한폭 확대 예고 및 확대 전문 전송
 - *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시각 포함(회원은 이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
 - * 가격제한폭 확대전 잔존시간(4분, 3분, 2분, 1분)이 남은 경우, 그 정보를 시장에 안내
- (거래소 → 시장(위탁자)) 가격제한폭 확대요건 도달 시, 해당 상품과 가격제한폭을 시장에 안내

3 수탁 관련사항

- (호가적합성 점검의무 면제) 장중 가격제한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가격제한폭에 대한 호가적합성 점검의무'가 면제됨
-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입력제한)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상한가의 매수호가나 하한가의 매도호가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
 - “호가 점검시점”의 상·하한가를 적용
(당시 단계별 상한가가 8%일 경우 이를 그 시점의 상한가로 적용)
 - * 장중 단계별 상하한가에 입력된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단일가시간에 시장가호가로 전환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입력이 제한됨
- (위탁금액 산정기준) 옵션 시장가 매수 주문 등*에 대한 증거금 산출을 위해 위탁금액 산정시 항상 가격제한폭 최대 변경단계(3단계)의 상한가를 적용*

○ 예를 들어,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주문제출시점 가격제한폭이 8% 이더라도 최대 변경단계인 20%를 적용하여 위탁금액을 산출

* 옵션 매수 시,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등을 입력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산출 시, 위탁가격을 상한가로 적용

□ (증거금률) 특이사항 없음

□ (기본예탁금 인출을 위한 옵션매수자의 하한가 제출) 옵션 매수미결제약정 보유자가 기본예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시점의 하한가로 매도주문을 제출 필요

※※ 사항 급변시 위탁증거금이 실제 결제금액보다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더욱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

4 기타 반영사항

□ (주식CB 발생 시 시장조치)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를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거래로 전환(현행 유지)

* 코스피시장 CB : 코스피200선물·옵션,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주식선물·옵션,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 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 주식선물스프레드,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

코스닥시장 CB : 스타지수선물,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

○ 코스피지수(코스닥지수)가 20% 이상 하락하여 당일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당일 주간시장 거래도 종료*

* 야간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시간 변경 또는 임시정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선물CB제도 폐지)** 코스피200선물, 섹터지수선물, 스타지수선물
가격변동에 의한 선물CB제도는 폐지(단계별 가격제한폭으로 대체)
- **(동시호가 배분)** 1단계, 2단계 상·하한가에서는 동시호가
배분 미적용하고 3단계에서만 동시호가 배분을 적용
 - 1단계 또는 2단계의 상·하한가가 3단계의 상·하한가가
20%(30%)와 동일한 경우는 동시호가 배분 적용
- **(시장가호가 의제약정가격 산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 결정시,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상·하한가를 적용

II. 파생상품시장의 장중추가증거금제도 도입안

1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징수(안)

- ◆ ① 거래소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 변동시 회원이 위탁자의 결제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 ② 회원은 장중 위탁증거금을 산출하고, 결제위험이 높은 위탁자에 대해 수탁 거부 및 부족액을 징수

- (대상 계좌) 모든 위탁계좌 (사전 및 사후위탁증거금* 계좌)
*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포함
- (추가 증거금 산출 요건) 코스피200 지수가 기초자산기준가격 (전일종가) 대비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 (가격변동)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
* '15.3.13 기준 코스피200 : ±4.8%
 - (기준시간) 거래소는 9~14시까지 매 정각 기준 가격변동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
 - * 9시는 9시1분 기준 가격변동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
 - ** 기준시간은 수능일 등으로 거래시각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시간도 장개시+1분, 장개시+1시간, 장개시+2시간 등으로 순연하는 등 시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거래소는 요건 부합 시 전 회원사에 해당 시각 기준 증거금 파라미터("이하 장중파라미터")를 전송
 - 추가적으로 가격변동요건 발생시점부터 당일 14시까지 매 정각 기준으로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

- (산출용) 가격변동요건 발생 시각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최초로 송신하는 파라미터 →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여부 결정, 장중 증거금산출*, 인출가능금액 산출 등에 사용

* 장중 사전위탁증거금,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전일 장종료 시점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계좌가 반대거래 및 대용증권 매도 등으로 추가예탁 해소여부 등의 산출 또는 판단 시 적용

- (점검용) 거래소는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 산출 이후 당일 14시*까지 매 정각 기준으로도 증거금 파라미터를 산출하여 제공 →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 해제용으로만 사용, 다만, 회원사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장중 추가증거금을 부과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 가능

* 수능일 등 시장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시점>

가격변동요건 도달 시점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9~14시 미발생	전문 전송 없음					
9시 최초 발생	●	○	○	○	○	○
10시 최초 발생	×	●	○	○	○	○
11시 최초 발생	×	×	●	○	○	○
12시 최초 발생	×	×	×	●	○	○
13시 최초 발생	×	×	×	×	●	○
14시 최초 발생	×	×	×	×	×	●

* ● : 추가예탁액 부과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산출용)

○ : 추가예탁액 부과 해제 여부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점검용)

- (장중 증거금 산출) 회원은 장중파라미터를 최초로 수신하는 경우 해당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유지위탁증거금액*(“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을 산출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유지위탁 증거금을 적용) + 당일결제금액* + 익일결제예정금액* (장중 당일차금 + 장중 갱신차금 + 장중옵션순매수대금)

* **당일결제금액**: 수수일이 도래한 결제금액(최종결제대금은 제외)으로서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결제금액 중 위탁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결제금액에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결제금액을 뺀 금액

장중당일차금: 당일의 약정가격(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 포함)과 당일 장중추가증거금 산출기준가격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장중갱신차금: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 장중추가증거금 산출기준시각의 장중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당일 장중추가증거금 산출기준시각까지 거래가 성립된 옵션거래의 매수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통화, 금리 등 주식상품이 아닌 상품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거나 결제이행이 필요한 경우 장중파라미터를 이용해 유지위탁증거금 산출
- 장중 사전위탁증거금 및 위험노출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 산출용으로 제공된 장중파라미터를 이용하거나 전일 장종료시점 기준 증거금파라미터를 이용 가능

《장중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 접수이후 증거금 산출 방법》

기체출 미체결 주문	신규주문	미결제약정	결제예정금액
Ⓐ		Ⓐ	
Ⓐ		Ⓑ	
Ⓑ		Ⓑ	
Ⓑ		Ⓐ	

Ⓐ : 전일장종료시점 기준 증거금파라미터 적용

Ⓑ : 당일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 적용

□ **(증거금 장중 부과요건*) 예탁총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 증거금 산출 기준시점 기준

** 결제시한 도래전의 대응증권 매도금액 가산

□ **(증거금 추가예탁액) 증거금 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 (“이하 장중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

* 결제시한 도래전의 대응증권 매도금액 가산

○ **(장중위탁증거금액)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위탁증거금률적용) + 당일결제금액 + 익일결제예정금액(장중 당일차금 + 장중 갱신차금 + 장중 옵션순매수대금)**

○ **(예탁수단) 현행 증거금예탁수단과 동일**

* 현금, 대응증권, 외화, 외화증권 등

□ **(예탁시한)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 다만 위탁자 파악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 시각 이전까지 예탁시한 설정 가능**

* 예탁 이전까지 야간선물거래 참여 불가, 코스피200옵션 야간거래의 경우 해외시장이지만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미예탁한 경우 익일 오전 장개시전 협의거래 시 수탁이 거부될 수 있음

□ **(증거금 부과 통지 및 증거금 예탁시까지 조치)**

○ 회원은 추가 위탁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위탁자(사전 및 사후위탁증거금 계좌 모두 해당)에게 추가 위탁증거금 부과를 지체없이 통지(의무)

- 회원은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해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로 결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의무)

- 기 제출된 미체결주문의 취소는 가능

* 현행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시까지의 회원 조치와 동일

※※ 회원은 약관의 장중추가증거금 미이행시 조치에 관한 사항에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수탁이 거부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약관 반영 필요

-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과 별도로 이미 예정된 증거금의 추가예탁이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은 기존대로 수행, 즉 장중추가증거금이 오히려 감소해도 예정된 결제금액 납부*

* 예) 예탁액이 100인 마진콜 발생 투자자가 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 (M₁) 500, 시황급변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이 300, 장중 위탁증거금(M₂)이 400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된 추가예탁 400납부 필요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 축소)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이 발생하는 사후위탁증거금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시점부터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위험노출액한도를 2배 이내로 축소

□ (예탁 불이행시 조치*)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원이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예탁을 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또는 위탁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대용증권 등 매도 가능(임의)

- 회원은 장중 추가예탁 발생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개시 시각에 반대매매 호가를 제출 하더라도 시가단일가시간 중 장중 추가예탁이 이행되는 경우 기 제출 반대매매호가 취소 가능

* 현행 위탁증거금 예탁 불이행 시의 회원 조치와 동일

《사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1)》

(상황 : M_1 (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 \leq M_2 (장중위탁증거금))

시각	상황	수탁 가능 여부	반대매매 가능 여부
전일 장종료	추가예탁 발생(M_1)	거부	X
8시	M_1 미예탁	거부	X
9시	장중추가예탁 발생(M_2)	거부	X
12시	M_1 예탁(결제이행)	거부	X
	M_1 결제불이행	거부	○
24시*	M_2 예탁(결제이행)	수탁가능	X
	M_2 결제불이행	거부	○

* 장중추가증거금 예탁시한(회원별 상이, 이하 같음)

《사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2)》

(상황 : M_1 (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 $>$ M_2 (장중위탁증거금))

시각	상황	수탁 가능 여부	반대매매 가능 여부
전일 장종료	추가예탁 발생(M_1)	거부	X
8시	M_1 미예탁	거부	X
9시	장중추가예탁 발생(M_2)	거부	X
12시	M_1 예탁(결제이행)	수탁가능	X
	M_1 결제불이행	거부	○

* 예탁액이 100인 마진콜 발생 투자자가 전일 장종료 기준 위탁증거금(M_1) 500, 시황급변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이 300, 장중위탁증거금(M_2)이 400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3)》

(상황 : P_1 (전일 장종료 기준 사후위탁증거금) \leq P_2 (장중위탁증거금))

시각	상황	수탁 가능 여부	반대매매 여부
전일 장종료	사후위탁증거금 산출(P_1)	수탁가능	X
8시	P_1 미예탁	수탁가능	X
9시	장중추가예탁 발생(P_2)	거부	X
10시	P_1 예탁(결제이행)	거부	X
	P_1 결제불이행	거부	○
24시	P_2 예탁(결제이행)	수탁가능	X
	P_2 결제불이행	거부	○

《사후위탁증거금 계좌의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발생 사례(4)》

(상황 : P_1 (전일 장종료 기준 사후위탁증거금) > P_2 (장중위탁증거금))

시각	상황	수탁 가능 여부	반대매매 여부
전일 장종료	사후위탁증거금 산출(P_1)	수탁가능	X
8시	P_1 미예탁(결제이행)	수탁가능	X
9시	장중추가예탁 발생(P_2)	거부	X
10시	P_1 예탁(결제이행)	수탁가능	X
	P_1 결제불이행	거부	○

* 예탁액이 100인 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P_1) 500, 시황급변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이 300, 장중위탁증거금(P_2)이 400이 발생하는 경우

□ **(증거금 부과해제 결정)**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을 부과 통지한 이후에도 회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해제 가능*

* 위탁자가 부과통지를 받은 후에 보유 미결제약정을 해소하거나 시장상황이 변동되어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

○ 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시황 변동에 따른 증거금액 축소, 예탁금액 증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에 한해 회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해제가 가능

○ 회원은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해제의 근거 등을 내부 통제기준에 마련 필요

□ **(인출가능금액)** 모든 위탁계좌*는 장중추가증거금 산출용 증거금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산출된 사전위탁증거금 및 사전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출 가능

*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 포함

2 증거금률 조정기준 개선(안)

- **(현황)** 매 분기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측정하여 내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증거금률 조정대상 상품을 선정하고, 주관적 요소*를 감안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폭 결정

* 국내외 시장상황, 가격변동성에 대한 전망, 상품별 투자자 분포 및 거래유동성, 가격변동성의 분포 특성 및 결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 **(문제점)** 매 분기 정기점검 이외에 시장상황의 급변 등 발생 시, 증거금률 수시조정의 근거가 내부 가이드라인에 마련

- 그러나, 증거금률 수시조정의 기준, 절차 등이 특정되지 않아 큰 폭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증거금률 조정을 통한 대응이 곤란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15%→30%)에 따라 외부충격에 의한 가격변동 확대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개선방안)** 정기조정의 점검주기 개선 및 수시조정 기준 신설

① 정기조정의 점검주기 축소 : 매 분기 → 매월 또는 2개월

② 수시조정 세부기준 신설

- 가격변동성이 점차 상승하거나 가격의 갑작스런 폭락(crash) 발생 시, 내부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증거금률을 신속히 인상하여 증거금률의 적정성 및 적시성 제고

※ 증거금률 조정 시, 조정된 증거금률이 회원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전문형태로 전송할 예정

III. 과다호가부담금 징수기준 완화

(현황) 계좌별로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의 일별 호가건수가 거래량에 비해 **과다***한 경우 과다호가부담금 (100만원)을 징수

- * ① (호가건수가 2만건 ~ 10만건 & 호가건수/약정수량이 20 이상) 또는
- ② (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 & 호가건수/약정수량이 10 이상)인 경우

* (예외) 월 2회까지는 면제하되, ①의 수치가 100이상 이거나, ②의 수치가 50이상인 경우는 예외 없이 부담금을 징수

(개선) 호가건수 기준을 10만건 이상으로 단일화하고, “호가건수/약정수량” 수치기준을 15로 상향

* (예외) 월 2회까지는 면제하되, “호가건수/약정수량” 수치가 기준수치의 5배 이상인 경우는 예외 없이 부담금을 징수

IV. 향후 필요조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15. 4월 예정

(시행시기)

○ 가격안정화장치 및 장중추가증거금제도 : '15.6.15(월) 예정

○ 과다호가부담금 기준 완화 : '15.4월 예정

가격제한제도 변경 관련 주요 FAQ

Q1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하면 무조건 확대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선물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하고 5분 이내에 가격이 상하한가를 벗어나더라도 상·하한가 도달 후 5분 이후에 가격제한폭은 확대됩니다.
- 다만, 15시 이후에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서 형성되는 경우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Q2

가격제한폭과 관련한 호가적합성 점검은 당일 모든 상품에 대해 면제되나요 ?

- 가격제한폭 관련한 호가적합성 점검의무는 가격제한폭이 장중에 확대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Q3

옵션 시장가매수 주문 등에 대한 위탁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2일 설명회 후 내용 변경)

- 옵션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의 매수 주문 제출시 위탁금액은 항상 해당상품 최대변경단계(3단계)의 상한가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Q4

5분 Cooling기간동안 다른 호가접수 가능한가요?

- 5분 동안은 별도의 시장조치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호가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징수 관련 주요 FAQ

1 장중 추가징수 시간, 횟수, 대상 등 요건 문의

Q1.1 장중 추가징수 기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가격변동기준 시점)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 기준시점은 9시* 부터 14시까지 매 정각 기준으로 하루 6번이며 해당시점에 코스피200이 가격변동요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

* 9시 정각에는 KOSPI200 시가가 결정되기 전이므로 9시 1분의 KOSPI200 가격을 적용

- 매 정각 사이 가격변동요건에 도달하였더라도 정각기준에 가격 변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예) 09시 01분 : 코스피200 전일대비 -3.5% 변동

09시 25분 : -5.2% 변동(유지위탁증거금률 80%이상)

10시 00분 : -2.8% 변동(유지위탁증거금률 80%이하)

- ▶ 9시와 10시 사이에 유지증거금률의 80%이상 변동하였으나 10시 기준 80% 이하로 변동하였으므로 10시 시점에는 가격변동요건 미충족

Q1.2 3년국채선물이나 달러선물 미결제만 보유하고 있는 계좌도 장중추가증거금 적용대상인가요?

- (장중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계좌)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합니다.

-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 전 금융시장에 영향이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전 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위탁증거금계좌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 모두 적용

-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는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으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충격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200의 가격변동으로 시장 충격여부를 판단합니다.

Q1.3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의 산출은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해야 하나요?

□ (산출용 파라미터 전송) 거래소는 최초로 가격변동요건에 도달한 경우에 모든 회원사에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합니다.(산출용)

* 주식관련 상품 뿐 아니라 모든 파생상품의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 회원은 최초에 수신한 정보를 이용한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하여 증거금의 추가예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이후 14시까지 매 정각에 발동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금 파라미터를 전송합니다. (점검용*)

* 회원은 점검용 파라미터를 이용한 위탁자의 증거금을 산출하여 추가예탁 여부를 결정하여도 됩니다.

<증거금 파라미터 전송 시점>

가격변동요건 도달 시점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9~14시 미발생	전문 전송 없음					
9시 최초 발생	●	○	○	○	○	○
10시 최초 발생	×	●	○	○	○	○
11시 최초 발생	×	×	●	○	○	○
12시 최초 발생	×	×	×	●	○	○
13시 최초 발생	×	×	×	×	●	○
14시 최초 발생	×	×	×	×	×	●

* ● : 추가예탁액 부과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산출용)

○ : 추가예탁액 부과 해제 여부 결정 시 증거금 파라미터 (점검용)

2 통보시점 및 수탁거부 시점 문의

Q2.1

증거금 시스템 산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통보 시한이 있나요? 그리고 수탁거부 처리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회원사는 장중 증거금 계산을 완료한 후 부과 요건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를 통보하고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 주문에 대한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

- 회원사에 따라 파생상품 계좌 수, 시스템 상황 등이 다르므로 고객 통지 및 수탁거부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객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장중 추가증거금에 의해 수탁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함(약관에 기재)
- 모든 계좌의 증거금 산출 후 부과요건 해당하는 계좌를 일괄적으로 수탁거부 처리할 수도 있고, 각 계좌별로 증거금 산출 후 수탁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예탁액 문의

Q3.1

장중 위탁증거금 산출시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과 결제 예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추가예탁액은 증거금 산출 기준시점의 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 총액에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위탁증거금액은 미체결 주문의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 기준 시점의 선물가격을 정산가격으로 사용하여 산출한 假 정산금액과 옵션순매수대금, 결제전 당일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 장중 위탁증거금액 산출(사전증거금계좌 사후증거금계좌 동일)

-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 당일결제금액(결제전)
- 익일결제예정금액

①장중 당일차금 + ②장중 갱신차금 + ③장중 옵션순매수대금

※ 장중증거금 계산시 기초자산기준가격, 선물정산가격, 옵션증거금기준 가격은 산출시점의 가격을 사용

Q3.2

장중 추가증거금액이 발생한 계좌가 장종료 시점에 추가 증거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종료 시점 기준으로 장중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 해제가 가능합니다.

* 유지위탁증거금액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액 < 예탁총액

Q3.3

전일 장종료 시점에 추가예탁이 발생한 계좌가 장중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일 장종료 시점에 예정된 증거금의 추가예탁이나 사후위탁 증거금의 예탁은 기존대로 수행합니다.

※ 계좌별 발생 경우에 대해서는 본문 “예탁 불이행시 조치” 참조

(예) T-1일 장종료 시점의 추가예탁이 1,000만원이고 T일 9시 장중 추가 예탁액이 1,200만원 발생한 경우

▶ T일 12시 반대거래는 장종료 시점 추가예탁액(1,000만원)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전일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처리

▶ 반대거래 처리 또는 추가 납입 후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장중 파라미터 적용)하여 부과 해제 가능

- 시장상황이 변동되어 전일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계좌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장중 파라미터 적용) 수준 이상이 되면 회원의 판단에 따라 수탁거부를 해제하고 반대거래를 미적용 할 수 있습니다.

(예) T-1일 장종료 시점의 예탁총액이 2,000만원, 위탁증거금이 3,500만원, 유지증거금이 2,500만원

▶ T일 고객이 1,000만원을 입금하고(예탁총액은 3,000만원) 장중 파라미터 적용 시 위탁증거금이 2,800만원, 유지증거금이 1,900만원이 된 경우, 회원은 수탁거부를 해제하고 반대거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Q3.4

9시 기준에 산출한 추가예탁액이 이후 장중파라미터에 변동이 되나요?

- 최초 가격변동요건 발생 이후 수신한 증거금 파라미터로 재계산된 위탁증거금액은 증가(감소)되어도 추가증거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부과요건 해제 여부 결정에만 사용

(예) 예탁총액이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

- (9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 위탁증거금액 4,5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3,000만원 → 추가증거금액은 2,000만원 부과 통보 및 수탁거부
- (10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 위탁증거금액 4,2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2,800만원 → 추가증거금액은 2,000만원(변동 없음)

Q3.5

국채선물, 통화선물, 돈육선물, 미니금선물 등 최종결제가격이 14시 전에 산출되거나 당일 장종료 후 산출되는 상품의 경우 장중추가증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국채·통화·금선물) 최종결제가격이 최종거래일 중 14시 전에 산출되는 상품으로서 장중 추가증거금 산출일이,

- ① (최종거래일(T)인 경우) 최종결제가격이 이미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않고,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 가격과 정산가격을 이용하여 장중 당일차금, 장중 갱신차금, 순위험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

* 국채선물, 통화선물, 금선물 모두 11시30분에 산출

** 통화선물과 금선물은 최종결제가격이 당일 정산가격과 동일하여 사실상 최종결제가격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

② (T+1 이후인 경우) 국채선물과 통화·금선물의 추가증거금 산출방법이 상이

- (국채선물) 이미 산출된 최종결제가격을 이용하여 최종결제 차금을 산출하여 T+1일에는 당일결제금액에 포함

- (통화·금선물(실물인수도상품)) 인수도증거금의 경우(T+1 ~ T+2일)에는 이미 확정된 최종결제가격과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인수도증거금을 산출

□ (돈육선물, 미니금선물) 최종결제가격이 최종거래일 중 산출되지 않는 상품으로 장중 추가증거금 산출일이,

① (최종거래일(T)인 경우) 최종결제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가격과 정산가격을 이용하여 장중 당일차금, 장중 갱신차금, 순위험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

② (T+1인 경우) 최종결제가격이 이미 산출되었어도 산출기준시점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최종결제수량에 대한 최종결제확정전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

③ (T+2인 경우) T+1일 장종료시점에 산출한 최종결제차금이 T+2일에는 당일결제금액으로 반영됩니다.

4 사후증거금계좌의 적용 문의

Q4.1 사후증거금 계좌는 예탁총액의 5배까지 위험노출액 한도를 적용하여 거래하고 있는데 장중 추가증거금 요건이 발생하면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코스피200 가격변동이 급격히 커져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로 사후위탁증거금계좌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 또한, 장중 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된 사후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한도는 예탁총액의 2배로 감소합니다.

▶ (2배 적용 시점) 수탁거부시점부터 당일 정규시장 거래 중

Q4.2 사후증거금 미납계좌는 10시까지 신규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9시에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수탁거부 처리 되나요?

□ 현행 사후증거금 미납계좌는 예탁시한(10시)까지 신규거래 및 반대거래가 가능하나 9시에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 대상 계좌가 되면 신규거래 및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이 거부됩니다.

5 전일수신 및 장중수신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문의

Q5.1 장중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의 반대거래 체결시 어떤 파라미터로 증거금을 재계산 하나요?

□ 장중 추가예탁 부과해제 및 인출가능금액 산출 이외의 경우에는 전일 장종료 파라미터 또는 장중 산출용 파라미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Q5.2

인출가능금액 산출시에는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한 증거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인출시 인출가능총액과 현금도 제어를 해야하는 건가요?

모든 계좌는 “최초 발생시점의 장중 파라미터*(산출용)”를 적용한 위탁증거금액을 사용하여 인출가능금액을 산출합니다.

* 이 경우 미체결주문에 대해서도 산출용파라미터 적용

-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지 않은 위탁계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출가능총액 및 인출가능현금 산출을 위해 인출시점의 위탁 증거금액 및 현금예탁필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Q5.3

부과 해제 후 전일 기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주문가능금액, 인출가능금액을 산출하면 되는지?

(주문가능금액) 부과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계좌의 주문 가능금액 산출시에는 전일 장종료 파라미터 또는 장중 산출용 파라미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출가능금액) 가격변동요건이 발생한 시점(최초 1회)의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모든 계좌에 적용합니다.

6 부과 해제 요건 문의

Q6.1 증거금 부과해제는 회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위탁증거금 계좌 중 위탁자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가격변동요건 발생 시 부과요건(예탁총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계좌는 고객 통지 및 수탁거부가 “의무”입니다. 따라서 가격변동요건 발생 시점에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사후 위탁증거금계좌는 수탁거부를 적용해야 합니다.

▶ 보유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계좌별로 부과해제 또는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을 미적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다만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반대거래로 보유 미결제약정이 해소되었거나 점검용파라미터 적용시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회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해제 가능

※ 부과해제 가능 예시

(예1) 전일 장종료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10시에 장중추가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원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12시 수신한 증거금 파라미터로 증거금 산출시 부과요건 미충족

▶ 부과해제 가능합니다.

(예2) 9시 예탁총액은 2,500만원

○ (9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 위탁증거금액 4,5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3,000만원
→ 추가예탁액은 2,000만원 부과 통지

○ (9시 30분 고객이 500만원 납입) 예탁총액 3,000만원

○ (10시 기준 파라미터 적용) 위탁증거금액 4,000만원 유지위탁증거금액 2,800만원

▶ 10시 부과해제 가능합니다.

(예3) 장중 부과 해제 가능 여부 판단

- 9시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 장중 부과 요건 해당
- 10시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 장중 부과 요건 해당
- 10시 30분 : 반대거래를 통해 9시 기준의 추가증거금 부과요건은 해소하였으나 10시 기준의 증거금은 부과요건에 해당
 - * 9시 보다 10시 시장 변동이 더 크게 발생한 경우
- 11시 증거금 파라미터 적용 : 장중 부과 요건 미충족

▶ 회원은 9시 기준의 증거금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10시 30분 부과해제 가능하며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시에 해제도 가능합니다.

Q6.2

장중 증거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거부 예외적용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7 반대거래 문의

Q7.1

반대거래가 회원사 임의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거래를 하지 않거나 전일 장중 부과 발생한 계좌에 대해 12시에 반대거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장중 추가예탁 불이행 계좌에 대한 반대거래는 회원사 자율에 의해 처리하며 반대거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일 장종료 시점에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와 같이 12시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중 또는 전일 장종료 기준 추가예탁 불이행 계좌에 대한 반대거래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회원사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